

2018년도 훈련기관 신규모집 (기술 분야 및 영역 추가 포함)

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(이하 인증원)의 훈련기관 평가 및 운영규칙(KCIMD-P-08)에 따라 2018년도 훈련기관 신규모집(기술 분야 및 영역 추가 포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21일
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원 장

1. 모집 개요

- (1) 모집 분야 : 진동, 트라이볼로지, 열화상 분야
- (2) 모집 기관수 : 0개 기관
※ 기존 훈련기관의 경우, 기술 분야 및 영역 추가 포함.
- (3) 모집 기간 : 2017. 8. 1.(화) ~ 2017. 9. 29.(금)
- (4) 평가 기간 : 2017. 9. 29.(금) ~ 2018. 8. 30.(목)
※ 평가 단계별 기간 총합(문서평가 → 현장평가 → 입회평가)
- (5) 훈련기관 유효기간 : 2018. 9. 1.(토) ~ 2022. 8. 31.(수)
※ 평가 결과 승인된 훈련기관에 한함.

2. 신청 자격

2.1 진동 분야

ISO 18436-2(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-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-제2부 : 진동의 상태 감시와 진단)와 ISO 18436-3(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-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- 제3부 :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)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.

2.2 트라이볼로지 분야

ISO 18436-4(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-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-제4부 : 현장 윤활제 분석)와 ISO 18436-3(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-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- 제3부 :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)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.

2.3 열화상 분야

ISO 18436-7(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-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-제7부 : 열화상)과 ISO 18436-3(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-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- 제3부 :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사항)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.

3. 신청 종류 별 평가 일수

신청 종류	문서평가 ¹⁾	현장평가 ²⁾	입회평가 ³⁾
최초	1MD	2MD	2MD
기술 분야 추가	1MD	1MD	2MD
영역 추가	-	1MD	1MD

1) 문서평가 : 신청조직의 품질시스템 문서가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(비 방문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).

2) 현장평가 : 평가위원이 신청조직의 사무소에 방문하여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적합성 및 이해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평가.

3) 입회평가 : 평가위원이 신청조직의 훈련과정에 입회하여 해당 절차 준수 및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평가.

※ 현장평가와 입회평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.

4. 신청서 접수

4.1 신청 모집기간

2017. 8. 1.(화) 09:00 ~ 2017. 9. 29.(금) 18:00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분에 한함.

4.2 신청 방법

(1) 인증원 이메일(kci-md@kci-md.or.kr) 또는 인증/훈련기관 관리팀(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, 르네상스오피스텔 1406호 (06651))으로 구비서류 제출.

(2) 신청 기간 내에 평가비를 납부해야 함.

(3) 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 서식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.

(4) 문의 : 인증/훈련기관 관리팀 02-3474-8003(내선3)

4.3 구비서류

- (1)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자 훈련기관 승인 신청서 1부.
 - (2) ISO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자 훈련기관 교관 이력서 각 1부.
 - (3) ISO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자 훈련기관 교관 적격성평가표 각 1부.
 - (4) 문서 및 현장평가 기준표(훈련기관 기재 부분만 작성) 1부.
 - (5) 연간 훈련계획표 1부.
 - (6) 분야별 ISO 18436-2, ISO 18436-4, ISO 18436-7과 ISO 18436-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시스템 문서 1부.
 - (7) 사업자등록증 1부.
- ※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
4.4 평가비

- (1) 평가비 : 2,000,000원/1개 영역
 - ※ 납부 계좌 : 하나은행 103-237748-00604(예금주 한국소음진동공학회)
 - ※ 평가비는 법인세법(제121조)에 따라 계산서 발행 불가.
 - ※ 평가비는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납부해야하며, 승인된 훈련기관의 당해 연회비로 대체됨.
- (2) 평가비 환불 신청기간 : 2017. 10. 13.(금) 까지
 - ※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 불가.
- (3) 환불 신청방법 : 이메일(kci-md@kci-md.or.kr)로 다음 정보를 송부
 - 기관 명, 신청 분야 및 영역, 평가비 납부일, 환불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

5.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

- (1) 신청기관은 평가과정 중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단계별(문서, 현장, 입회평가) 부적합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완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. 단, 시정조치 내용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 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.
- (2) 평가위원이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신청기관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함.
- (3)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일부(또는 전부)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당해 신청은 기각되며, 신청서류 및 평가비는 반환하지 않음.

6. 평가결과 발표

- (1) 발표 날짜 : 2018. 8. 31.(금)
- (2) 발표 방법 : 인증원 홈페이지(www.kci-md.or.kr)에 공고 및 훈련기관 승인서 발송.

7. 훈련기관 승인 후 운영 참고사항

- (1) 매년 1분기에 훈련기관과 인증원 간 간담회를 개최함.
- (2) 훈련기관은 승인 영역 별 2,000,000원을 연회비로 납부해야 함.
- (3) 승인된 훈련기관은 1년 주기로 요구사항 준수 및 유지 상태 확인을 위한 정기 사후관리 평가 대상임.
- (4) 승인된 훈련기관은 4년 주기로 승인기간 연장여부(갱신)를 결정하기 위한 재평가 대상임.
- (5) 정기 사후관리 및 갱신평가 결과 제시된 기간 내에 부적합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훈련기관 승인이 정지되며, 정지 기간 중에는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없음.
- (6) 정지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(또는 합격증)을 발급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기관을 승인 취소함. 승인 취소된 훈련기관은 최초 평가 절차에 따라야 함.
- (7) 이 외 기타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평가 및 운영규칙(KCIMD-P-08) 참고(승인 훈련기관에 한하여 송부).

8. 불만 및 이의 처리

훈련기관 모집/승인과 관련하여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만 또는 이의제기자의 신분과 연락처, 불만 및 이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 이메일 또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의 불편 및 건의사항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인증원에 제출해야 함.

- 가) 이의 제기 :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인증 또는 훈련기관 승인과 관련하여 인증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.
- 나) 불만 : 개인 또는 조직이 인증원 또는 인증원이 인증한 자격자나 승인된 훈련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인증원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.